

## 2026년 5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서해안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조업을 실천합시다!

### 지도·단속 방향

- 봄철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4월15일~5월15일)에 따라 육·해상 집중점검
- 실뱀장어 불법조업 관계기관 특별점검(2~5월)에 따라 육·해상 집중점검
- 부설형 어업(연·근해안강망, 각망, 근해통발 등) 어구사용량 초과 등 특별점검(4~5월) 실시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인 이하 승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점검 강화

### 중점 점검사항

- (실뱀장어안강망) 무허가(구역이탈), 어구 규모 위반 점검 및 어구 부설현황 조사
- (통발·안강망) 무허가(도계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 그물코 규격 위반 등
- (근해유자망) 참조기 포획금지기간 위반(4.22.~8.10.), 포획금지체장 15cm이하  
\* 제외 : (기간) 참조기를 어획량의 10%미만 포획/ (체장) 참조기 어획량 중 금지체장 참조기를 20%미만 포획
- (각망·승망·장망류) 무허가(구역이탈), 어구 사용량 초과 등
- (근해형망) 불법어구 사용(그물코 등 변형어구), 야간조업 등
- (어선안전)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고장 미신고,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착용 점검

### 처벌 규정

처벌 규정

| 관련법         | 위반행위                     | 처분사항                      |                         |               |            |
|-------------|--------------------------|---------------------------|-------------------------|---------------|------------|
|             |                          | 사법처분                      | 행정처분*(어업정지)             |               | 과태료        |
| 수산업법        | 무허가<br>(도계위반·허가구획 이탈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안·근해·구획어업별<br>행정처분 상이  |               | —          |
|             | 면허·허가·신고어업 외의<br>어업      | 3년이하 징역 또는<br>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                      | 1차) 경고 2차) 취소 | —          |
|             | 어구실명제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신고                   | 1차) 취소        | —          |
|             | 어구 규모<br>(사용량, 그물코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 —          |
| 수산자원<br>관리법 | 불법어구 적재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          |
|             | 포획금지 기간 등 위반             | 2년이하 징역 또는                | 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 |               | —          |
|             | 포획금지 체장 등 위반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            |
|             | 유해어업 금지                  | 2년이하 징역 또는<br>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30일 2차) 면허취소        |               | —          |
| 어선법         | 어선 상태유지 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br>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
|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 —                         | —                       |               | 3백만원<br>이하 |
| 어선안전<br>조업법 | 2인 이하 조업선<br>구명조끼 미착용    | —                         | —                       |               | 3백만원<br>이하 |

# 붙임 1

## 서해안 주요 수산물 포획 금지기간 · 금지체장(5월)

| 수산자원 | 금지기간                                                                                         | 금지체장                                                          | 비고 |
|------|----------------------------------------------------------------------------------------------|---------------------------------------------------------------|----|
| 참조기  | 7.1 ~ 7.31<br>(근해유자망은 4.22~8.10)<br>*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15cm<br>*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
| 갈치   | 7.1 ~ 7.31<br>(북위 33도 이북 해역 한정,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br>*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18cm(항문장)<br>*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
| 고등어  | 2026. 5.1 ~ 5.31<br>(소형선망은 4.1 ~ 4.30)<br>*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21cm<br>*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
| 꽃게   | 6.21 ~ 8.20<br>(연평도 주변 7.1 ~ 8.31 / 대청도어선 어업구역 7.16 ~ 9.15)                                  | 6.4cm(두홍갑장)                                                   |    |
| 참홍어  | 6.1 ~ 7.15                                                                                   | 42cm(체반폭)                                                     |    |
| 살오징어 | 2026. 4.1 ~ 5.31<br>(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정치망은 4.1 ~ 4.30)                                           | 15cm(외투장)<br>*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    |
| 조피볼락 | -                                                                                            | 23cm                                                          |    |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



- ☑ 신고대상 :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구 과다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등 수산물계법령 위반자
- ☑ 신고방법 :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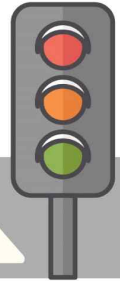
불법어업 신고 → 현장조사·수사 → 포상금 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고를 받은 불법어업 신고센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결정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서 제출

### 포상금 지급금액

| 유형    | 구분        | 포상금액                                   | 포상금 결정기준       |
|-------|-----------|----------------------------------------|----------------|
| 사법 처분 | 징역형       | 1년이상                                   | 300만원          |
|       |           | 1년미만                                   | 200만원          |
|       | 벌금형       |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 상한액 300만원, 하한액 50만원) |                |
|       |           | 집행유예                                   | 50만원           |
|       |           | 선고유예                                   | 20만원           |
|       |           | 기소유예                                   | 10만원           |
| 행정 처분 | 어업 등 행정처분 | 취소                                     | 200만원          |
|       |           | 정지                                     | 100만원          |
|       |           | 경고                                     | 20만원           |
| 과태료   | 과태료 부과    | 20만원                                   |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기준 |

## 사건처리 신호등 서비스 안내



- ☑ 사건처리 신호등이란?  
수산물계법령 위반자 대상 단계별 사건처리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 확인방법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westship.mof.go.kr) -> 정보공개 -> 사건처리신호등 메뉴에서 확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국민마당

알림마당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사건처리신호등

공익신고

안전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형사범죄법 위반신고

감정피해신고

국민마당

단장과의 대화

불법어업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익신고

안전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형사범죄법 위반신고

감정피해신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입찰안내

채용공고

보도자료

기관서신자료

불법어업 FAQ

해양법예보

해양수산물보

### ☑ 사건처리 단계

| 이름 | 단속지역 | 일시         | 처리상황 | 위반사항         |
|----|------|------------|------|--------------|
|    |      | 2021-02-03 | ●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
|    |      | 2021-01-31 | ●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    |      | 2021-01-31 | ●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    |      | 2021-01-21 | ●    |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

- → 서해어업관리단 처리 중
- → 관할법원 처리 중
- → 처리 완료

접수 및 처리절차 등 진행사항 문의  
061-240-7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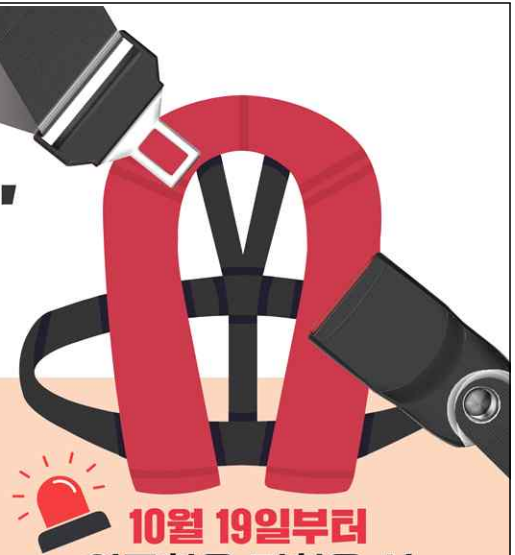


국민을 위해하는  
적극행정



서해어업관리단

# 바다 위에 안전벨트, 구명조끼!



**벨트형 구명조끼 착용의무 강화('25.10.)**

**현행** 기상(예비)특보시 갑판에 있는 경우  
**개정** 현행+승선원 2인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10월 19일부터**  
**의무착용·미착용 시**  
**단속 강화**

- ❗ **바다로 추락했을 땐 구명조끼가 생명조끼**  
▶ 구명조끼 착용자의 해상 생존률 약 69%(미착용자의 1.4배)
- ❗ **바다에 빠졌을 때 생존방법**
- ① 침착유지 - 심호흡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한다.
  - ② 체력보존 -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체온유지에 집중한다.
  - ③ 체온유지 - 체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몸 가까이 모아 주세요.
  - ④ 위치표시 - 조명탄을 이용 신호 보내기, 거울이나 반사판을 이용하는 방법, 큰소리로 위치기를 한다.



## 팽창식 구명조끼(목걸이형) 착용방법

- 1**

구명조끼를 몸에 걸친 후 버클을 확실하게 채워 몸에 꼭 맞게 벨트를 조여줍니다.

**2**

작동용 끈을 당기면 구명조끼에 가스가 충전되면서 팽창됩니다.

**3**

가스가 부족하다면 노즐에 공기를 불어 넣어 보충해 주세요.

## 팽창식 구명조끼(목걸이형) 착용방법

- A**

제품을 양쪽 허리에 둘러주세요.

**B**

버클을 닫아 주세요.

**C**

버클의 좌, 우 조리개를 이용하여 허리에 맞게 조여주세요.
- ※ D링과 수동끈이 아래로 향하게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구명조끼 착용!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 목 적

수산자원보호, 해양오염방지, 어업질서유지, 안전사고 예방

## 대 상

사용자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불법 어구·시설물

- 무허가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40조)
- 어구 사용량, 조업 금지기간·구역을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60조제1항)
-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시설물(「수산업법」 제76조)

## 시행 내용·절차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 통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① 불법 어구 발견



② 철거 후 보관 공고  
(열람부 작성)



③ 소유자  
반환 · 벌금 부과



④ 1개월 내 미반환시  
매각·폐기



시행주체

행정관청(해양수산부, 지자체)

제도 시행

2026년 4월